

#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6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,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제명 정비

- (당초)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
(변경) 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사항 정비(안 제1조, 제4조, 제7조)

다. 위원회 구성, 실무위원회 등 정비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10조)

라. 용어 및 문구 등 정비(안 제2조~제4조, 제7조~제11조)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”를 “구미시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”을 “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”으로, “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1인을 포함하여 15인”을 “1명을 포함하여 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조정실장이 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미시 소속 관계 공무원 5명 이내
2.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
3.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3조 중 “심의 조정”을 “심의·조정”으로, “실무위원회를 운영”을 “해당  
안건의 심의 기간에 한정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 
“민자유치사업”을 “민간투자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민자  
유치시설사업”을 “민간투자시설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사업  
계획 심의”를 “사업계획에 관한 사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  
민자유치사업”을 “그 밖에 민간투자사업”으로, “부외하는”을 “회의에  
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위원장이 지명한”을 “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”  
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간사 1인과 서기 1인”을 “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간사 1명과  
서기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민자유치사업업무담당주사가”를  
“민간투자사업 소관 업무 부서의 담당 팀장”으로, “민자유치사업담당자”를  
“민간투자사업 담당자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관계전문가”를 “관계 전문가”로,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  
하고, “수있다”를 “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작성 비치하여야”를 “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 회의”로, “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 
범위내에서”를 “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구미시  
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것외”를 “것 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2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구미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</u> <u>설치 · 운영 조례</u></p>	<p><u>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</u> <u>운영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</u>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<u>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은 구미시 본청 각 국장과 구미시의회의원 2명,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2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</u>」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항----- ---- <u>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구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 1명을 포함하여 15명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u></p> <p>1. <u>구미시 소속 관계 공무원 5명 이내</u></p>

④ (생략)

제3조(실무위원회)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시행사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4. (생략)
5.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생략)

2.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

3.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실무위원회) -----  
----- 심의.  
조정-----  
-----  
----- 해당 안건의  
심의 기간에 한정하여 실무위원  
회를 구성·운영----

제4조(기능) ----- 각 호  
-----.

1. 민간투자사업-----
2. 민간투자시설사업 -----
3. ----- 사업계획에  
관한 사항
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-----  
----- 회의에  
부치는 -----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업무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.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-----  
----- 회의에 출석한  
위원 중에서 호선된 -----  
--.

제7조(간사 등) ① -----  
----- 위원회가  
구성된 경우 간사 1명과 서기 1명  
-----.

② ----- 민간투자사업 소관  
업무 부서의 담당 팀장이 ----  
----- 민간투자  
사업 담당자-----.

제8조(의견청취 등) -----  
-----  
----- 관계 전문가-----  
----- 관계 기관  
-----  
-----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-----  
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----  
-----  
-----.

제10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 
회의----- 관계 전문  
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  
에서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  
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  
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 
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 
바에 따라 -----.

제11조(운영세칙) -----  
-- 것 외-----  
-----  
-----.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

제6조(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생략

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

제4조(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,

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.

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,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.

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.

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. 다만,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소 관 부 서		예산재정과
입 안 자	과 장	조 민 규
	팀 장	김 원 대
	담 당 자	김 수 현 (480-2533)